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최근 주택가,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시장·군수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보호의무를 규정함 (제2조)
- 시장·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제3조)
- 유기동물을 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, 학술연구단체 등에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함 (제5조)
-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(제8조)
- 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유기동물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(제9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방법 및 그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

- 별표 (소요경비 산출 기준표)의 제2호의 소요 경비의 지급에 있어 위탁보호수수료를 관리인 및 포획인부 노임의 20%를 적용하는 근거에 따른 상세한 설명과 유기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에 따른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